

# 전자문서법 개정안 설명 자료

(by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)



< 2020.06 >



## 2. 자체 보관 vs.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(1/2)

###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의 전자문서 법적 효력

-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(법 제31조의6 ①), (법 제5조의 ① ②)
-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.(법 제31조의6 ②)

###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의 전자문서 내용 불변경 보장

-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 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(법 제31조의7 ①)

###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정성 입증

-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,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·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.(법 제31조의7 ②)

구분	자체보관(클라우드 포함)	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
문서보관 요건 준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보관되었음을 문서보관자가 입증 책임 부담</li> <li>• 자체 스캔 후 보관한 전자화문서의 경우 원본을 폐기할 수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보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(제31조의6 ①, 법 제5조 ①②)</li> <li>•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(법 제31조의6 ②)</li> </ul> <p>※ 간주(看做) :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,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</p>
전자문서 위·변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문서보관자가 입증책임 부담</li> <li>•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인증서 유효기간(1년) 이후에 전자문서의 유효성 문제 발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문서 보관기간 중 그 내용이 변경(위/변조)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(법 제31조의7 ①)</li> </ul>
보관증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서보관자가 보관사실/작성자/수신자/송수신 일시가 진정함에 대한 입증책임(증명책임) 부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문서 보관관련 증명가능, 증명서 발부 및 증명서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(법 제31조의7 ②)</li> </ul> <p>※ 추정(推定) :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대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추정력이 번복될 가능성은 있음</p>
작성자증명		
수신자증명		
송신/수신 일시 증명		

※출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, 공인전자문서센터 해설가이드 2017.

## 2. 자체 보관 vs. 공전소 보관 시 법적 효력(2/2)

구분	자체 보관(클라우드 포함)			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
	전자서명	전자서명 WORM	전자서명 WORM 타임스탬프	전자서명 WORM 시점확인
본인확인	○	○	○	○
무결성				
부인방지				
유효기간(기본)	전자서명 1년 (인증기관)	전자서명 1년 (인증기관)	전자서명 1년 (인증기관)	없음 (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)
유효기간(연장)	불가능	불가능	불가능	필요 없음
데이터 보안 (기밀성)	○	○	○	○ (암호화, 접근통제)
WORM 보관	X	○	○	○ (3중으로 보관)
시점확인/검증	X	X	△	○ (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)
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유효성 검증	X	X	X	○ (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)
증명주체	자체적으로 증명	자체적으로 증명	자체적으로 증명	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 (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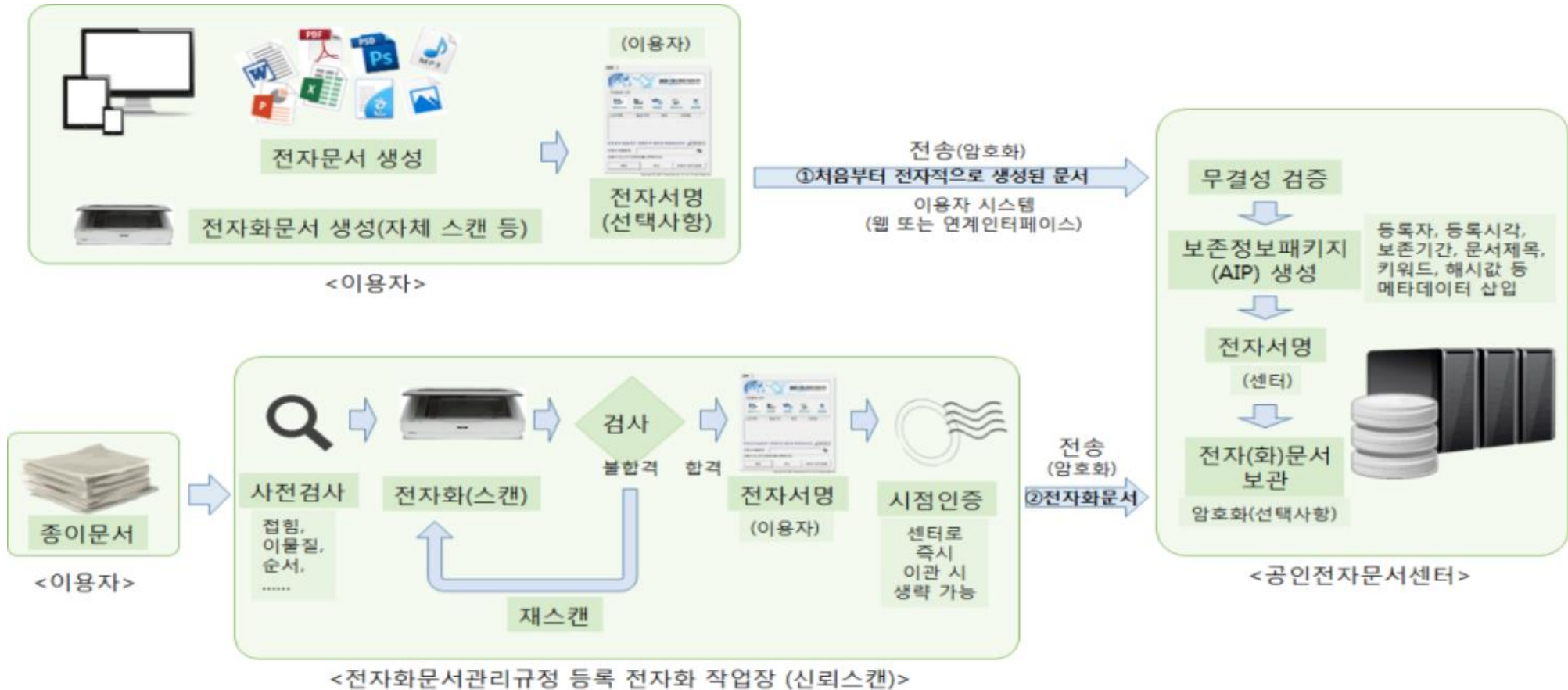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, 공인전자문서센터 해설가이드 2017.

### 3. 공인전자문서센터 미 활용 vs. 활용 비교

구분	공인전자문서센터 미 활용 고객	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 고객
전자화작업(스캔)장	일반 작업장 보유	정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지정 작업장 보유
전자(화)전자문서 보관	법적 효력 미 확보, 실물문서 폐기 불가능한 사본문서(자체 시스템 보관)	법적 효력 확보, 실물문서 폐기 가능한 원본문서(공전소 시스템 보관)
영업점 내 문서고 유무	있음	없음
회사 문서고 유무	부서별 개별 문서고 이용 (전국 또는 건물 내 분산)	그룹 공통 문서고 이용
문서폐기 가능 여부	폐기 불가 (회사 문서고 중대 원인)	폐기 가능
법적 효력	분쟁 시, 회사 스스로가 원본문서임을 입증해야함	분쟁 시, 공인전자문서시스템 보관 문서로 대응이 가능함

## 4.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프로세스

전자문서는 ①처음부터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와 ②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작성된 전자화문서로 구분되며,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이용자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, 전자화문서의 경우는 전자서명과 시점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. 이렇게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암호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송함으로써 문서의 보관이 완료됨.



※자료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# 감사합니다.

<문의사항>  
subby777@hanafn.com  
010-3217-5245 / 이승섭 팀장